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24
----------	-------

발의연월일 : 2026. 7. 13.

발 의 자 : 김선교 · 이현승 · 구자근
김성원 · 정동만 · 박수민
김미애 · 김상훈 · 김위상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국내 처음으로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해당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방제약제 개발, 병해충의 생태 및 특성 연구, 효과적인 방제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병해충을 확보하여 활용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는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확보·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신속한 방제약제 개발이나 과학적 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이에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하기 위하여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8 신설 등).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8(방제 대상 병해충의 이용) ①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다.

1. 방제 대상 병해충의 분류·진단 및 예찰·역학·소독·방제 기술 개발 등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방제약제 생산을 위한 경우
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누구든지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받은 시설 밖으로 유출 또는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하여 회수 및 폐기를 명하여야 하며,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제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을 위한 허가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병해충 이용을 종료할 경우 해당 병해충을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1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제46조제2항 중 “식물검역기관의 장의”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의”로 한다.

제47조에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없이 이용한 자

10의3.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해당 시설 밖으로 유출 또는 반출한 자

10의4. 제31조의8제3항에 따른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1조의8(방제 대상 병해충의 이용) ①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다.</u> <u>1. 방제 대상 병해충의 분류 · 진단 및 예찰 · 역학 · 소독 · 방제 기술 개발 등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u> <u>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방제약제 생산을 위한 경우</u> <u>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u> <u>② 누구든지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받은 시설 밖으로 유출 또는 반출해서는 아니된다.</u> <u>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u>

제45조의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7.·8. (생략)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u>충을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하여 회수 및 폐기를 명하여야 하며,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u> <u>1.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u> <u>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제한</u> <u>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을 위한 허가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u>⑤ 제1항의 병해충 이용을 종료할 경우 해당 병해충을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u> 제45조의3(청문) ----- ----- -----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제31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u> 7.·8. (현행과 같음)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	---

② 이 법에 따른 <u>식물검역기관</u>의 <u>장의</u>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11. (생략)	② -----<u>농촌진흥청장</u> 또는 <u>식물검역기관의 장의</u> ----- ----- -----. 제47조(벌칙) ----- ----- ----- -----. 1.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없이 이용한 자</u> <u>10의3.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해당 시설 밖으로 유출 또는 반출한 자</u> <u>10의4. 제31조의8제3항에 따른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u> 11. (현행과 같음)
---	---